

의안번호	2219201
의 퇴 인	이종욱의원
회 답 일	2026. 7. 20.
추계번호	26C2848

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	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·구조·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여야 함(제3항)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, 점검의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인의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의4제1항1)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실시하

- 1) **제4조의4(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·위탁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·위탁할 수 있다.
1.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
 2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
 3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
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(이하 생략)

할 때 건축·구조·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우, 해당 자격 전문가를 동반하여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 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음

- 현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을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,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다수 공무원이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
-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경우 해당 안전점검의 대상과 그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

제2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2.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「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」 (문체부 고시)

2.2.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

-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.
-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자는 공무원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한다.
- 정밀점검의 실시자는 해당분야(건축, 건설안전, 토목, 소방시설 등)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